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실무해설 ②

황영환 / 대한설비건설협회 기술지원실 부장

5.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1) 의 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조정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5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순공사금액 :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2) 적용대상공사(시행규칙 제74조 5항, 시행령 제64조 2항)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적용지수(시행규칙 제74조 4항)

-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의 평균지수
- (3)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지수
- (4)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한다.

4)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2003. 12. 26)

(1) 비목군 편성

- ①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중 순공사금액이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 수표상의 분류에 따라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군을 편성한다.

- A: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 B: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국산기계경비, 외국산기계경비 구분)
- C: 광산품
- D: 공산품
- E: 전력·수도·도시가스
- F: 농림·수산물
- G: 산재보험료
-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Z: 기타 비목군

〈공사의 경우 비목군 예시〉

※ 기계경비는 1998. 2.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구분 적용한다.

②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 종전(1996. 4. 10전)에는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6. 4. 10자 동예규개정으로 그 변경이 가능 토록 되었음.

(2) 계수의 산정

① A, B, C, D, E, F, G, H, …… , Z 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 즉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 b, c, d, e, f, g, h, …… , z 등으로 표시한다.

② 이때의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③ 계수는 조정기준일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달라지므로 계수도 이에따라 변경이 된다.

※ 종전(1996. 4. 10전)에는 계수의 변동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6. 4. 10자 동예규개정으로 변경의 제한이 없게 되었음

(3) 지수의 산정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계약체결당시)의 지수표시 : A₀ · B₀ · C₀ · D₀ · E₀ · F₀ · G₀ · H₀ ······ Z₀
-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 A₁ · B₁ · C₁ · D₁ · E₁ · F₁ · G₁ · H₁ ······ Z₁

① A : 노무비 지수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는 각 부문별 공사(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공사 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전체의 노임단가를 평균한다.

※ 노무비지수의 적용시기는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동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

② B : 기계경비 지수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로서 국산장비와 외국산장비를 구분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산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왔으나, '99. 9. 9 이후부터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일에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적용환율도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지수조정율(K)이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할 때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지수화하지 않고 평균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른 지수화된 비목과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그 값이 왜곡되어 산출되므로 반드시 지수화하여 대입하여야 함.

※ 노무비 및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해 공사에 투입된 노무직종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가 아니라 각 공사부문 전체직종의 노임과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회계 2210 - 3239, 1986. 8. 21)

③ C ~ F: 재료비 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상 당해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2200 - 137 - 4, 2003. 12. 26)

④ G: 산재보험료 지수

④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동법 제63조, 시행령 제60 조)에서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④ 지수산정

• $G_0 = A_0$ 계약체결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 $G_1 = A_1$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 G_0 : 계약체결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G_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A_0 :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지수

— A_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산재보험료지수 변동율: G_1 / G_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 = $g (G_1 / G_0)$

※ g : 계약체결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지수 산출요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g 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순공사비에서 산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⑤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수산정

• H_0 = 계약체결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 c + d + e + f) \times$

계약체결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H_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

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A_1 / A_0)) +$

(c (C1 / C0)) + (d (D1 / D0)) + (e (E1 / E0)) + (f (F1 / F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H₀ : 계약체결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 H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 a' : 계약체결 당시의 직접노무비 계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변동율 = H₁ / H₀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수 = h (H₁ / H₀)

⑥ Z : 기타 비목군 지수

㉗ 기타 비목군의 범위 : 순공사비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은 대부분 공사원가중에서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비 비목을 제외하고 노무비(A)와 재료비 구성 비목(C~F)을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㉘ 산식 :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5개)이나, A, C, D, E, F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

$$\bullet Z_0 = \frac{aA_0 + cC_0 + dD_0 + eE_0 + fF_0}{\text{비 목 군 수}}$$

$$\bullet Z_1 = \frac{aA_1 + cC_1 + dD_1 + eE_1 + fF_1}{\text{비 목 군 수}}$$

• 기타 비목군 지수 변동률 =

$$\frac{Z_1}{Z_0} = \frac{aA_1 + cC_1 + dD_1 + eE_1 + fF_1}{aA_0 + cC_0 + dD_0 + eE_0 + fF_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 비목군 계수 = z (Z₁ / Z₀)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K = \left(\frac{aA_1}{A_0} + \frac{bB_1}{B_0} + \frac{cC_1}{C_0} + \frac{dD_1}{D_0} + \frac{eE_1}{E_0} + \frac{fF_1}{F_0} + \frac{gG_1}{G_0} + \frac{hH_1}{H_0} + \frac{zZ_1}{Z_0} \right) - 1$$

※ 단 Z = 1 - (a + b + c + d + e + f + g + h +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계약체결 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 (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조정기준일을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된다.

(5)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완료된다.

5)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예시(증액조정)

예시조건

- 계약일자(직전조정일) : 2002. 8. 14
- 공사기간 : 2002. 5. 12 ~ 2004. 12. 31
- 계약금액(총괄) : 8,800,000,000원
- (1차 : 3,000,000,000원, 2차 : 4,000,000,000원,

3차 : 1,800,000,000원)

- 선금지급일자 및 금액 : 2002. 5. 20, 600,000,000원(20%)
- 물가변동기준일 : 2003. 2. 28
-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 2004. 1. 15
- 물가변동 적용대가(2003. 2. 28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7,179,621,000원)

지수 조정을 산출표(증액조정)

구분	비목	1) 물가변동 적용	2) 계수	3) 기준지수	4) 비교	5) 지수율	6) 조정율	
		대가(잔여이행분)	2002.8.14	2003.2.28	지수	4) / 3)	2) × 5)	
A	노무비	직접노무비	1,747,130,000	0.2966	100.00	108.82	1.0882	0.3227
		간접노무비	269,580,000	0.0458	100.00	108.82	1.0882	0.0498
	소 계	2,016,710,000	0.3424					
B' B''	경비	국산경비	24,621,000	0.0042	100.00	97.97	0.9797	0.0041
		외산경비	17,665,000	0.0030	100.00	99.26	0.9926	0.0029
	소 계	42,286,000	0.0072					
C D E F	재료비	광 산 품	58,915,000	0.0100	122.20	123.80	1.0130	0.0101
		공 산 품	3,133,309,000	0.5319	123.10	127.30	1.0341	0.5500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738,000	0.0001	139.20	142.90	1.0265	0.0001
		농림수산부	105,836,000	0.0180	118.60	124.90	1.0531	0.0189
소 계	3,298,798,000	0.5600						
G H I J Z	제경비	산재보험료	68,567,000	0.0116	100.00	95.62	0.9562	0.011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3,836,000	0.0193	100.00	105.29	1.0529	0.0203
		고용보험료	13,041,000	0.0022	100.00	82.35	0.8235	0.0018
		퇴직공제 부담비	36,652,000	0.0062	100.00	99.50	0.9950	0.0061
		기타비목	301,147,000	0.0511	100.00	105.22	1.0522	0.0537
소 계	533,244,000	0.0904						
	순공사원가	5,891,038,000	1.0000			5.15%	1.0515	
	일반관리비	294,551,000						
	이윤	341,340,000						
	공급가액	6,526,929,000						
	부가가치세	652,692,000						
	총 계	7,179,621,000						

▷ 산정해설

(1) 노무비 지수(A) 산정

- 근거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직종별 시중노임의 평균치

법령해설

구 분	기준시점(2002. 8. 14)의 노무비지수(A ₀)	비교시점(2003. 2. 28)의 노무비지수(A ₁)	비 고
공사직중 평균단가	76,040	82,752	
지 수	100	108.82	

* 노임단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시 참고사항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제 4510-2365, 1996. 10. 11)에 의거

가. 기준시점(2002. 8. 14 발표)의 노무비 평균치(A₀) = 76,040원

나. 비교시점(2002. 12. 17 발표)의 노무비 평균치(A₁) = 82,752원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82,752 / 76,040) \times 100 = 108.82\%$

노임발표일	2002.8.14	2002.12.17	2003.8.13	2004.1.1	비 고
공사직중 평균단가	76,040	82,752	84,143	85,894	대한건설협회공표

(2) 기계경비 지수(B) 산정

• 근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상의 건설장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

① 국산장비 지수(B') 산정

구 분	국산장비 합계액	기종수	대당평균단가	비 고
기준시점(2002. 8. 14)의 기계경비지수(B' ₀)	15,006,977	193	77,756	
비교시점(2003. 2. 28)의 기계경비지수(B' ₁)	14,627,690	192	76,185	

가. 기준시점(2002. 1. 2)의 기계경비 평균치(B'₀) = 77,756천원

나. 비교시점(2003. 1. 2)의 기계경비 평균치(B'₁) = 76,185천원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76,185 / 77,756) \times 100 = 97.97\%$

② 외산장비지수(B'') 산정 - 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

구 분	환율(\$)	외산장비 합계액	기종수	대당평균단가 (천원)	비 고
기준시점(2002.8.14)의 기계경비지수(B'' ₀)	1,196.60	86,232,067	376	229,340	
비교시점(2003.2.28)의 기계경비지수(B'' ₁)	1,187.80	85,597,898	376	227,653	

가. 기준시점(2002. 8. 14: 환율적용)의 기계경비 평균치(B''₀) = 229,340천원

나. 비교시점(2003. 1. 2: 환율적용)의 기계경비 평균치(B''₁) = 227,653천원

* 기준시점이 100일 때 비교시점의 지수 = $(227,653 / 229,340) \times 100 = 99.26\%$

(3)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 근거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 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해당 기본분류 지수를 적용

① 재료비 생산자물자 지수(C ~ F)

구 분	기준시점(2002. 8. 14)의 재료비지수(C ₀ ~F ₀)	비교시점(2003. 2. 28)의 재료비지수(C ₁ ~F ₁)	비 고
광산품(C)	122.20	123.80	
공산품(D)	123.10	127.30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139.20	142.90	
농림수산물(F)	118.60	124.90	

C₀ ~ F₀ :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참조(2002년 7월 지수적용)

C₁ ~ F₁ :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참조(2003년 2월 지수적용)

- 광산품 지수변동율(C) = $(123.8 / 122.2) \times 100 = 101.30\%$

- 공산품 지수변동율(D) = $(127.3 / 123.1) \times 100 = 103.41\%$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변동율(E) = $(142.9 / 139.2) \times 100 = 102.65\%$

- 농림수산물 지수변동율(F) = $(124.9 / 118.6) \times 100 = 105.31\%$

(4) 산재보험료 지수(G) 산정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동법 제63조, 시행령 제 60조)에서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함

① 산재보험료 지수

구 분	기준시점(2002. 8. 14)의 산재보험료지수(G ₀)	비교시점(2003. 2. 28)의 산재보험료지수(G ₁)	비 고
산재보험료 지수	330,0000	315,5780	

※ 산재보험료 지수산식

가.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G₀)

= 계약체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A₀)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나.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 지수(G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A₁)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지수변동율 = $(G_1 / G_2) \times 100 = (315.5780 / 330.0000) \times 100 = 95.62\%$

가. 기준시점의 산재보험료 지수(G₀)

G₀ = $(100 \times 3.3) = 330.0000$

나. 비교시점의 산재보험료 지수(G₁)

G₁ = $(108.82 \times 2.9) = 315.5780$

법령해설

※ 연도별 산재보험요율표

단위 : %

연도별 사업종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설업	3.4	3.3	2.9	3.3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 산정

- 근거 :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

구 분	기준시점(2002.8.14)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 ₀)	비교시점(2003.2.28)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 ₁)	비 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수	1,6104	1,695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산식

가.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₀)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c+d+e+f)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c, d, e, f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비목에 대한 계수

나.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및 재료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A₁) / A₀} + (c C₁) / C₀ + (d D₁) / D₀ + (e E₁) / E₀ + (f F₁) / F₀}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변동율 = (H₁ / H₀) × 100 = (1,6957 / 1,6104) × 100 = 105.29%

가. 기준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₀)

H₀ = (0,2966 + 0,5600) × 1,88 = 1,6104

나. 비교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H₁)

H₁ = {(0,2966 × 1,0882) + (0,0100 × 1,0130) + (0,5319 × 1,0341) + (0,0001 × 1,0265) + (0,0180 × 1,0531)} × 1,88 = 1,695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대상액	5억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고
		비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건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6) 고용보험료 지수(I) 산정

• 근거: 조달청 고시, 고용보험요율에 의하여 노무비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① 고용보험료 고시(I)

구분	기준시점(2002. 8. 14)의 고용보험료 지수(I ₀)	비교시점(2003. 2. 28)의 고용보험료 지수(I ₁)	비고
고용보험료지수	74.0000	60.9392	

※ 고용보험료 지수산식

가.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 지수(I₀)

$$= \text{계약체결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A_0) \times \text{계약체결일 당시의 고용보험요율}$$

나.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 지수(I₁)

$$= \text{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 지수}(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요율}$$

$$\text{※ 고용보험료 지수변동율} = (I_1 / I_0) \times 100 = (60.9392 / 74.0000) \times 100 = 82.35\%$$

가. 기준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I₀)

$$I_0 = (100 \times 0.74) = 74.0000$$

나. 비교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I₁)

$$I_1 = (108.82 \times 0.56) = 60.9392$$

※ 연도별 고용보험요율표

단위: %

등급별(추정금액)	연도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4등급이하: 토목120억미만 (건축110억미만)	0.65	0.65	0.74	0.56

법령해설

(7)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 산정

• 근거 : 조달청 고시, 퇴직공제부금비요율에 의하여 노무비에 퇴직공제부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산식

가.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0)

$$= \text{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지수}(A_0) \times \text{계약체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나.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1)

$$= \text{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지수}(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①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

구 분	기준시점(2002. 8. 14)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0)	비교시점(2003.2.28)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1)	비 고
퇴직공제 부금비 지수	187,0000	186,0822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변동율 = $(J_1 / J_0) 100 = (186.0822 / 187.0000) \times 100 = 99.50$

가. 기준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0)

$$J_0 = (100 \times 1.87) = 187.0000$$

나. 비교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_1)

$$J_1 = (108.82 \times 1.71) = 186.0822$$

※ 연도별 퇴직공제부금비요율표

단위 : %

공종별	연도별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
	건축공사		2.06	1.87	1.71
토목공사		1.91	1.79	1.63	1.48

(8) 기타 비목군 지수(Z)

• 기타비목군의 범위는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비목군으로 편성

※ 기타비목군 지수(Z)

구 분	기준 시점(2002.8.14)의 기타비목군 지수(Z_0)	비교 시점(2003.2.28)의 기타비목군 지수(Z_1)	비 고
기타비목군 지수	20,6175	21,6942	

※ 기타비목군 지수산식

가.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기타비목군 지수(Z_0)

$$Z_0 = ((\text{노무비(공사직종)계수} \times \text{기준지수}) + (\text{광산품계수} \times \text{기준지수}) + (\text{공산품계수} \times \text{기준지수}) + (\text{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계수×기준지
수)+(농림수산물계수×기준지수) /
비목군수(5)

나.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비목군
지수(Z1)

$Z1 = \{((\text{노무비(공사직종)계수} \times \text{비교지수}) + (\text{광산품계수} \times \text{비교지수}) + (\text{공산품계수} \times \text{비교지수}) + (\text{전력수도 및 도시가스계수} \times \text{비교지수}) + (\text{농림수산물계수} \times \text{비교지수})) / \text{비목군수}(5)$

※ 기타비목군 지수변동을 = $(Z1 / Z0) 100 = (21.6942 / 20.6175) 100 = 105.22\%$

가. 기준시점의 기타비목군 지수(Z0)

$= \{((0.3424 \times 100.0000) + (0.0100 \times 122.2000) + (0.5319 \times 123.1000) + (0.0001 \times 139.2000) + (0.0180 \times 118.6000)) / 5 = 20.6175$

나. 비교시점의 기타비목군 지수(Z1)

$= \{((0.3242 \times 108.8200) + (0.0100 \times 123.8000) + (0.5319 \times 127.3000) + (0.0001 \times 142.9000) + (0.0180 \times 124.9000)) / 5 = 21.6942$

(9) 조정금액 산정

- 물가변동 적용대가 = 7,179,621,000
- 조정금액(물가변동×조정율) = 7,179,621,000 × 5.15% = 369,750,000
- 선금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당해년도)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1,379,621,000 × 5.15% × 20% = 14,211,000
- 실증감액 = (조정금액 - 선금공제액) = 369,750,000 - 14,211,000 = 355,539,000

•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실증감액) = 8,800,000,000+355,539,000 = 9,155,539,000

※ 1차이후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지수는 직전 조정시 사용한 비교시점의 지수를 기준시점의 지수로 대체함

6.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특약인정여부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인정여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인정되고있는 바, 계약의 내용, 형태가 복잡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법령규제만으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볼 때 특약의 인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된다.

2)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특약인정 범위

(1) 특약으로 정한 모든 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관계법령상 물가변동의 근본규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특약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시중노임 발표전의 노임단가로 설계된 공사가 정부측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전에 이미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시중노임 단가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회계 1210-2116, 1981. 11. 4, 회계 45107-1817, 1995. 9. 27 등)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 감사등에 의거 발견되면 계약 상대방에게 동차액을 환수한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회계 125-1663, 1991. 7. 5)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 제7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 이 규칙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